

의안번호	제 202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7월 일 (제302 회)

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 도 경 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7월 5일

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7월 5일

발의자 : 김도경 의원
강현삼,김광수,노광기,
손문규,심기보,장선배

1. 제정이유

- 장애인 지원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미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,
-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(안 제5조)
 - 장애인 돌봄, 인식개선, 교육, 사례관리, 상담지원, 역량강화 등
- 장애인가족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 활용 규정(안 제6조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제정 조례안 : 별첨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 수반(비용추계서) : 별첨
- 집행기관 협의 여부 : 여
- 입법예고 여부 : 여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가족”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, 직계 존·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장애인가족 지원”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 사항
2.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가족의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자문기구 활용)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·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「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)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홍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 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

○ 재정요인 :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

○ 비용추계 내용 (개소당) 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소 요 액	비 고
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	250,000	센터종사자 인건비, 공공요금 등
사례관리사 교육	10,000	센터 근무 사례관리사 교육
홍보사업비	5,000	장애인가족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
장애인가족 욕구조사	10,000	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
합 계	275,000	

2. 재원조달 방안

○ 국비, 지방비 : 지방비 우선 부담

○ 충북도와 시군 분담비율 : 도(50), 시군(50)